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824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장종태 · 김문수 · 박용갑
장철민 · 이재강 · 이광희
박지원 · 민홍철 · 백승아
전진숙 · 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에 대한 자율적 정화가 어려워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더불어 실무 역

량 강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역시 법정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할 경우,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질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 제6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5(응급구조사중앙회)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단체(이하 “응급구조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응급구조사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응급구조사중앙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설립 인가 등) ①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협조 의무)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의8(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36조의7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제4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응급구조사중앙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단체”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과”를 “제1항제6호의2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로 한다.

다만,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6의2. 응급구조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은 응급구조사가 제5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구조사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구조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단법인 응급구조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응급구조사협회(이하 “구법인”이라 한

다)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응급구조사중앙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중앙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구법인의 지회는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지부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36조의5(응급구조사중앙회) ①</u> <u>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u> <u>두는 단체(이하 “응급구조사중</u> <u>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u> <u>한다.</u></p> <p><u>②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법인으로</u> <u>한다.</u></p> <p><u>③ 응급구조사중앙회에 관하여</u> <u>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u> <u>「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u> <u>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④ 응급구조사중앙회는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u> <u>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u> <u>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u> <u>하여야 하며, 시 · 군 · 구(자치</u> <u>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u> <u>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u> <u>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u> <u>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u> <u>한다.</u></p> <p><u>⑤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지부나</u></p> |

<신 설>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응급구조사중앙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설립 인가 등) ①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신 설>

<신 설>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로 정한다.

제36조의7(협조 의무) 응급구조사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의8(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응급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36조의7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응급구조사중앙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 단체-----.

③ · ④ (현행과 같음)

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